

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3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년 11 월 일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□ 제 안 이 유

- 가. 대통령께서 물소비 억제를 위해 수도물값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'99. 4. 7 일 국정개혁 보고시 지시
- 나.물관리 종합대책에서 상수도요금 현실화 목표를 설정하여 지방 상수도요금을 2001 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 지시
- 다. '98 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세입.세출 결산결과 39.2 %의 인상요인이 발생 하였으나 물가에 파급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.15 % 를 2000년 1월분 부터 인상하려는 것임

□ 주 요 골 자

- 가. 상수도요금 징수 조항중 제27조 제2항 “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” 라는 조항은 체납된 요금 일체를 현 소유자에게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삭제
- 나. 조례 별표1의 시설분담금표와 별표2의 업종별요금표를 인상 조정

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7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별표 1.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 별표 1 】

시 설 분 담 금 표

구 경 별	분 담 금 액	비 고
13 m/m	280,000	구경 변경 . 개조시에는 분담금의 차액만을 징수 한다.
20 m/m	785,000	
25 m/m	1,262,000	
32 m/m	2,243,000	
40 m/m	3,784,000	
50 m/m	5,803,000	
75 m/m	16,119,000	
100 m/m	23,997,000	
150 m/m	52,284,000	
200 m/m	74,262,000	

【 별표 2 】

업종별요율표

(단위 : 원)

업종별	사용량	톤당요금	비고
가정용	0 ~ 10	240	
	11 ~ 20	280	
	21 ~ 30	370	
	31 ~ 40	440	
	41 ~ 50	530	
	51 이상	680	
업무용	0 ~ 20	540	
	21 ~ 50	560	
	51 ~ 100	580	
	101 ~ 300	620	
	301 이상	700	
영업용	0 ~ 30	600	
	31 ~ 50	640	
	51 ~ 100	670	
	101 이상	740	
육탕용1종	0 ~ 200	360	
	201 ~ 300	420	
	301 ~ 500	480	
	501 이상	550	
육탕용2종	0 ~ 200	660	
	201 ~ 500	720	
	501 ~ 1000	1,200	
	1001 이상	1,800	

신.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
제27조 (요금의징수) ① ② <u>수도사용자들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</u>	제27조 (요금의징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< 삭제 ></u>																								
【별표1】 시설분담금표 <table><tr><th>구경별</th><th>분담금액</th><th>비고</th></tr><tr><td></td><td>별첨</td><td></td></tr></table>	구경별	분담금액	비고		별첨		【별표1】 시설분담금표 <table><tr><th>구경별</th><th>분담금액</th><th>비고</th></tr><tr><td></td><td>별첨</td><td></td></tr></table>	구경별	분담금액	비고		별첨													
구경별	분담금액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
	별첨																								
구경별	분담금액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
	별첨																								
【별표2】 업종별요금표 <table><tr><th colspan="4">현행</th></tr><tr><th>업종별</th><th>사용량</th><th>톤당요금</th><th>비고</th></tr><tr><td></td><td>별첨</td><td></td><td></td></tr></table>	현행				업종별	사용량	톤당요금	비고		별첨			【별표2】 업종별요금표 <table><tr><th colspan="4">개정안</th></tr><tr><th>업종별</th><th>사용량</th><th>톤당요금</th><th>비고</th></tr><tr><td></td><td>별첨</td><td></td><td></td></tr></table>	개정안				업종별	사용량	톤당요금	비고		별첨		
현행																									
업종별	사용량	톤당요금	비고																						
	별첨																								
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
업종별	사용량	톤당요금	비고																						
	별첨																								

신.구 조문대비표

현행			개정안		
시설분담금표 【별표1】 (단위 : 원)			시설분담금표 【별표1】 (단위 : 원)		
구경별	분담금액	비고	구경별	분담금액	비고
13m/m	280,000	구경변경. 개조 시에는 분담금 차액만을 징수한다.	13m/m	280,000	구경변경. 개조 시에는 분담금 차액만을 징수한다.
20m/m	<u>420,000</u>		20m/m	<u>785,000</u>	
25m/m	<u>776,000</u>		25m/m	<u>1,262,000</u>	
32m/m	<u>1,164,000</u>		32m/m	<u>2,243,000</u>	
40m/m	<u>1,552,000</u>		40m/m	<u>3,784,000</u>	
50m/m	<u>3,628,000</u>		50m/m	<u>5,803,000</u>	
75m/m	<u>6,480,000</u>		75m/m	<u>16,119,000</u>	
100m/m	<u>12,052,000</u>		100m/m	<u>23,997,000</u>	
150m/m	<u>24,104,000</u>		150m/m	<u>52,284,000</u>	
200m/m	<u>40,500,000</u>		200m/m	<u>74,262,000</u>	

신.구조문대비표

현행			개정안			비고
업종별요율표			업종별요율표			
【별표2】 (단위:톤/원)			【별표2】 (단위:톤/원)			
업종별	사 용 량	톤 당 요 금	업종별	사 용 량	톤 당 요 금	
가정용	0~10	200	가정용	0~10	240	
	11~20	230		11~20	280	
	21~30	310		21~30	370	
	31~40	370		31~40	440	
	41~50	450		41~50	530	
	51 이상	570		51 이상	680	
업무용	0~20	460	업무용	0~20	540	
	21~50	470		21~50	560	
	51~100	480		51~100	580	
	101~300	510		101~300	620	
	301 이상	580		301 이상	700	
영업용	0~30	520	영업용	0~30	600	
	31~50	550		31~50	640	
	51~100	570		51~100	670	
	101 이상	600		101 이상	740	
육탕1종	0~200	300	육탕1종	0~200	360	
	201~300	350		201~300	420	
	301~500	400		301~500	480	
	501 이상	460		501 이상	550	
육탕2종	0~200	550	육탕2종	0~200	660	
	201~500	600		201~500	720	
	501~1000	1,000		501~1000	1,200	
	1001 이상	1,500		1001 이상	1,800	